

[별지서식 제1호]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 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과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본 “별지 1호” 서식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양식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기초정보>

PART 1		배점
1. 연령(개인)	<input type="checkbox"/> 만 19세이하 <input type="checkbox"/> 만 20세~30세 <input type="checkbox"/> 만 31세~54세 <input type="checkbox"/> 만 55세~64세 <input type="checkbox"/> 만 65세 이상	5
1. 총 자본금 현황(법인)	<input type="checkbox"/> 200억 이상 <input type="checkbox"/>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 이상 ~ 1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미만	5
2. 투자하실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5
3.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 비보장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 주식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5
4.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5
5.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input type="checkbox"/> 채무상환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	5

	<input type="checkbox"/> 여유자금 <input type="checkbox"/> 자산증식	
6.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4
7.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3
8. 총 자산규모(순자산) (개인)	<input type="checkbox"/> 1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 이상 ~ 2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2억 이상 ~ 5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억 이상 ~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5
8. 연매출현황 (법인)	<input type="checkbox"/>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 이상 ~ 1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200억 이상	5
9.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3
10. 기대이익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5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0% 범위	5
11.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50% 범위	5



- 금융정보취약 소비자(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되며, ‘예금자보호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항목에 해당하십니까?
    - 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우선 설명 요청 고객
  -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중도해지(환매)시 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상품별 위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유의사항**

1. 고객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고객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	<input type="checkbox"/> 불원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input type="checkbox"/>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input type="checkbox"/>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small>※ 일임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small>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대리인 : 인(서명)

[별지서식 제1-1호]

## <일반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Part I)>

### □ 문항별 배점

- 1번(개인)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점, ④로 응답한 경우 3점, ⑤로 응답한 경우 2점
- 1번(법인)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 8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9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10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1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1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0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11번까지의 합이 41점인 경우,  $41\text{점}/50\text{점} \times 100 = 82\text{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20점이하 : 안정형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서식 제1-2호]

적정성 판단 보고서 (예시)

※ 회사별 기존 서류체계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 가능

고객명:	고객번호:
------	-------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고객 연령 :	
투자 기간 :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	
보유자산 등 :	
위험에 대한 태도 :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총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이 유	(회사별 기재)

■ 참고 사항

-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자 : \_\_\_\_\_    고객의 성명 : \_\_\_\_\_    서명/인

※ 회사 참고사항

※(예시) ① ( ) 개 항목 충족/미충족시 또는 ② 총점 ( ) 점 이상/ 총점 ( ) 점 이하 적정/부적정 해당여부는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름(아래 표 참조)

고객 정보	적정성 판단 결과	미충족 사유
고객 연령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 점	
투자 기간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 점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 점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 점	
보유자산 등 : (연간 소득 및 부채 포함)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 점	
위험에 대한 태도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 점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 점	
총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총점( )점	

[별지서식 제2호]

<[신용공여]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일반금융소비자)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정보 확인 항목>

대분류	질문 예시	비 고
1. 대출용도	1-1. 신용거래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주식 매수 <input type="checkbox"/> 주식 대주  1-2.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매수 <input type="checkbox"/> 가계자금 <input type="checkbox"/> 법인 자금 <input type="checkbox"/> 기 타	
2. 연령대 (개인)	<input type="checkbox"/> 만 19 ~ 30세 <input type="checkbox"/> 만 31 ~ 50세 <input type="checkbox"/> 만 51 ~ 64세 <input type="checkbox"/> 만 65 ~ 79세 <input type="checkbox"/> 만 80세 이상	
3-1. 자산규모 (개인)	<input type="checkbox"/> 1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 이상 ~ 5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억 이상 ~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3-2. 연간소득 (개인)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 ~ 1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 이상	
3-3. 부채현황 (개인)	<input type="checkbox"/> 1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 이상 ~ 5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억 이상 ~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3-4. 고정지출 (개인)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 ~ 1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 이상	
3-1. 총 자본금 (법인)	<input type="checkbox"/>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 이상 ~ 1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200억 이상	
3-2. 연간 순이익에 대한 예상(법인)	<input type="checkbox"/>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연간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4. 변제 계획	<input type="checkbox"/> 매도상환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	
5. 신용점수	<input type="checkbox"/> _____ 점 이상 ○당사 기준 _____점 이하의 약정 불가 (※ 고객의 신용점수는 신용약정 계약 체결전 회사에서 추후 확인합니다.)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적성성 판단 보고서 수취 여부  
 회 망       불필요

· 일자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별지서식 제2-1호]

<[신용공여] 고객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 1번 : 반영 없음

○ 2번(개인) : ① ~ ④ 로 응답한 경우 반영 없음, ⑤로 응답한 경우 부적정

○ 3번 ~ 4번 : 반영 없음

○ 5번 : 595점 이상 적정, 595점 미만 부적정

[별지서식 제2-1호]

### <[신용공여] 적정성 판단 보고서>

※ 회사별 기존 서류체계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

(신용공여) 적정성 판단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	-------

####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대출 용도 :	
연 령 :	
보유자산 등 :	
신용 점수 :	
변제 계획 :	(※ 신용거래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담보유지비용 미달시 매도상환 으로 기재 가능
신용공여 이해도 :	
기 타	

#### ■ 적정성 판단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	-----------------------------	------------------------------

#### ■ 기타 회사 확인 사항

유사한 고객과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이 보고서 내용은 상상인증권이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하기에 앞서 신용공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상상인증권 지점/부서명)

(담당자)

(서명/인)

## [별지서식 제3호]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 낮은위험 (6등급)
주식	해외주식, K-OTC, K-OTCBB, 코넥스, 비상장주식, 신용, 대출, ETF,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일반종목, 매도증권 담보대출				
파생상품	선물옵션						
채권	회사채 (B+이하)		회사채 (BB+~BB-)	회사채 (BBB+~ BBB-)	회사채 (A+~A-)	회사채 (AAA~ AA-)	국채, 지방채, 특수채
CP/단기사채	B+이하		A3+~A3-	A2+~A2-	A1		
CMA					CMA-RP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장형(ELS, DLS)			원금부분 보장형		원금보장 형	
	ELW, ETN						
집합투자증권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고객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공격투자형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 ELF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별지서식 제4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집합투자증권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고객의 투자성향별 집합투자증권外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지서식 제5호]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란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당일중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등락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o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o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o 일중매매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 o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o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o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체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 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6호]

##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

“시스템매매(System-trading)”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술지표나 가격예측이론 또한 미래의 시장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 매매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시스템매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시장, 거래기술 및 거래전략 등에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당사를 통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매시점, 매매호가 등 제반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상당한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지서식 제7호]

### 교부서류 확인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1. 금융투자상품의 (간이)투자설명서, 핵심(요약)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 교부 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 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 듣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신용거래계좌설정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대상임.
3.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등급 중 ○등급( 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음영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 판매직원 설명의무 이행확인

상품의 위험도, 손익구조,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설명의무 이행확인	본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상상인증권 _____ 지점(센터) _____ 직위 _____ 직원명 _____ (서명)	전화번호 _____

☞ 음영부분은 판매직원 자필기재

[별지서식 제8호]

## 《고령자 보호기준》

### 1. 고령투자자의 정의

- 가. 회사는 만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 나. 그 중 만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2. 전담창구의 설치

- 가.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 나.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해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 창구의 수는 지점 규모나 인력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령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도 이용 가능하다.
- 라. 전담창구 배치직원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 근무연한 이상의 직원을 배치한다.
- 마. 전담창구에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지점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팀장은 배제한다.
- 바.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를 자제한다.

### 3.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가. 회사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 4.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가.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 나. “투자권유 유의상품”이란 영 제2조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하며, 본사 전담부서는 신상품 출시 시 “투자권유 유의상품” 여부를 판단하여 영업점에 고지해야

한다.

**5.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가.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 가입 전 각 영업점 관리자(영업점장 또는 부재 시 업무팀장)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 나. 영업점 관리자는 아래 표에 따라 고령투자자와의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li> <li>•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li> <li>•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li> <li>•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li> <li>•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li> </ul>
--

다. 영업점 관리자가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가.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나.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 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 회사는 만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8. 고령투자자 보호관련 내부통제 강화**

- 가.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
- 나.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다.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 한하며, 조력자의 동의는 조력자 내방 시 동의서 징구 또는 고객이 영업점 녹취 전화기를 이용하여 조력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7호 참조>

마.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9. 초고령투자자에 대한 추가보호 방안

가.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

나. 판매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회사가 투자권유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고객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점의 관리자(영업점장 또는 부재 시 업무팀장)는 재차 상품의 부적합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럼에도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 나.의 판매를 허용한 경우 고객이 조력자를 지정했을 경우 영업점 관리자는 조력자에게 판매상품에 대한 위험고지를 충분히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력자의 서명(별도의 양식없이 고객 서명 옆) 또는 녹취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라.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 사후 확인을 반드시 실시 후 녹취내역을 기록·유지하며, 영업점 관리자가 상품 판매 전 유의사항을 사전 확인한 경우엔 해피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9호]

### 청약 철회 요청서

<b>■ 고객 정보</b>	
고객명 :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연락처 :
<b>■ 청약 철회 대상</b>	
<p>○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p> <p>-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p> <p>-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p> <p>○ (대출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p> <p>-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p> <p>-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p>	
청약철회 대상 상품 :	<input type="checkbox"/> 투자성 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input type="checkbox"/> 대출성 상품 : (신용거래, 증권담보대출)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년    월    일
2) 계약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b>■ 확인 사항</b>	
<p>○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p> <p>○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p>	
상기와 같이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별지서식 제10호]

##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b>■ 고객 정보</b>	
고객명 :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연락처 :
<b>■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b>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b>■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b>	
증빙자료(별도첨부)	
참고자료(별도첨부)	
<b>■ 확인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li> <li>○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p>상기와 같이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p>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별지서식 제11호]

##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b>■ 통지 대상 고객</b>	
고객명 :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연락처 :
<b>■ 회사의 통지 결과</b>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b>■ 안내 사항</b>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귀하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당사의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 상상인증권	